

언론피해구제제도와 관련 판례

오영권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제도의 효율적인 운용과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대전과 춘천에서 지역 언론계, 학계, 법조계, 사회 단체 등의 인사를 초청하여 지방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지난 5월 4일에는 대전 유성호텔에서 오영권 위원(대전지법 부장판사)의 주제발표와 최근혁 위원(충남대 법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토론회가 있었고, 6월 18일에는 춘천베어스타운 호텔에서 박용수 위원(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의 주제발표와 지규현 위원(전 춘천 MBC 상무)의 사회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다음은 주제발표논문(요약)과 토론내용이다.....(편집자 주)

I. 언론피해에 대한 구제제도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피해를 구제 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보도 자체에 대하여 피해자의 입장에서 반박, 변명, 보충 등의 보도를 청구하는 것이고, 다음으로 허위 보도에 대하여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의 정정보도를 요구하거나 보도를 잘못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사죄광고 등으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도 있으며, 또한 오보에 의하여 재산이나 경신적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손해를 금전으로써 배상을 받거나, 잘못된 보도행위를 한 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를 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피해를 구제 받는 경우 등이 있다.

그런데 민법 제 764 조는 "하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처분으로서는 신문, 방송, TV, 관보 등에 무죄판결 등을 게재하는 방법, 원상회복으로서의 취소청구권(Widerrufsanspruch), 금지청구권 등이 있다.

II. 각종 구제제도의 행사

피해자가 언론사에 대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음에 관하여는 법적인 근거가 있으나,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음에 관하여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 그러나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과 같이, 피해자는 사실상으로는 방송국 등에게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 언론사 등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 등에 관하여 협의를 한 후 즉시 이를 무료로 게재, 방송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정정보도청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는 없고, 위 경우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 또는 언론사에 서면으로 반론보도를 청구하지 않고서도 곧바로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 청구나 정정 보도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면, 반론보도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반드시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쳐야 하는데, 그 때에도 중재불성립 결정 또는 이의신청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정간법 제 19 조 제 1 항, 방송법 제 42 조, 종합유선방송법 제 45 조 제 10 항).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는 언론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신청했으나, 거처었느냐와 관계 없이 소를 제기 할 수 있다.

또한 반론보도청구권이나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여부,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쳤는지와 관계없이 위 소멸시효기간 내이라면 불법행위가 성립함을 전제로 언제든지 방송사나 보도행위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III. 청구권의 당사자

1. 반론보도청구권의 청구권자

반론보도청구권에 관한 법률의 규정은 청구권자를 방송 등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라고 규정한다.

가. '피해를 받은 자'의 의미

여기서 피해자라 함은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 관련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서 자기의 인격적인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보도내용에 대한 반론 내지 반박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자"를 말한다.

당사자 능력이 있는 자연인이나 법인격이 있는 법인 또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이나 재단이 이러한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당사자능력이 없는 법인격이 없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회사의 각부처나 국, 과가 이러한 피해자가 될 수 있음도 법적인 근거가 있다(정간법 제 16 조 제 7 항, 방송법 제 41 조 제 8 항, 종합유선방송법 제 45 조 제 9 항).

사단의 실제조차 갖추지 못한 동호모임, 향우회 등이 사회적 생활단위로서 실재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러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나. 개별적 연관성

사실적 주장에 대하여 피해를 받은 자라는 이 요건은 후술하는 "정당한 이익"의 요건과 함께 반론보도청구권을 과도하게 인정함으로써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언론활동의 마비를 방지해주는 중요한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개별적 연관성에 관하여 대법원은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서 자기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보도내용에 대한 반론 내지 반박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 자"가 개별적 연관성이 있으나, "개별적

연관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다른 언론기관의 보도내용까지 종합하여 이를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시했다.

다. 직접적 연관성

언론보도에서 직접적으로 피해자의 성명이 표시 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

성씨만 지칭한 경우에 피해자를 특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해 볼 때 편견 없는 상당수 독자나 그 기사에 관심 있는 독자라면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가명이나 익명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주소, 성명, 직업, 사회적 활동, 말씨, 신체적 특징 등에 의하여 동일인으로 식별이 가능하면, 개별적 연관성이 있다. 또한 성명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기사에 관련된 자의 숫자가 워낙 적을 경우에는 개별적 연관성이 인정될 수 있다.

라. 간접적인 연관성

간접적인 연관성은 무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없고 반론보도청구권을 인정한 제도의 취지에 따라 보도내용에 대한 반론 내지 반박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한 보호·감독이 불충분하였다고 보도한 경우에 그 부모나, 부인에 대한 비판적 보도에 대하여는 그 부모나 남편의 이름이 비록 직접 언급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들에게 반론보도청구권을 인정하여야 하고, "언론보도에서 언급된 서울 신림동 동네 학교'가 신청인 학교를 가리키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별적 관련성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정당, 회사, 협회 등과 그 구성원, 학교와 그 학생, 친구들 상호간에는 어느 일방에 대한 보도가 있다고 해서 다른 일방에 따른 보도청구권을 인정할 연관성은 없다고 하여야 하고, 또한 여기에서의 연관성이란 개별적 연관성을 의미하므로, 불특정 다수인(예컨대 흡연자, 음주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보도나, 지역적인 거명(예컨대 경상도 사람, 전라도 지방 등) 등의 경우에는 개별적 연관성을 인정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2. 정정보도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의 청구권자

정정보도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는 불법행위가 성립함을 전제로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을 필요로 하고 특정되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정정보도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당사자능력을 필요로 한다고 한다.

IV. 청구권의 요건

1. 반론보도청구권의 요건

(1) "사실적 주장"일 것

"사실적 주장" 이라 함은 특정인의 내부적 가치관이나 평가의견, 느낌의 표현 등의 가치판단적 주장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순수한 논평이나 비평은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가치판단적 주장과 사실을 구별하는 현재의 입법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구별이 쉽지 않음을 기화로 반론보도청구가 남용될 수 있으며 언론기관이 교묘한 방법으로 인격권을 침해하는 데에는 무력하다는 비판이 있다.

양자를 구별하는 기준이 문제인데, 그 일반적인 기준은 입증가능성으로 보아서 보도의 표현내용을 증거에 의하여 그 존부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사실적 주장이고 그렇지 않은 것이 가치판단적 주장이라고 할 수 있고, 해명가능성이나 역사성 등으로도 구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논설이나 논평, 비평 등은 그 자체로서 가치판단으로서의 성격을 띠므로 사실적 주장이라고 할 수 없으나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의 주장에 대하여는 반론보도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언론이 타인의 말 등을 인용하거나 전재한 즉, 독자투고, 기고문, 수기, 경찰 의견서, 공소장 등을 게재한 경우가 문제된다. 이 경우는 이것들이 언론사 등의 주장이 아니고 독자 등의 주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만 언론사 등의 편집에서 채택되어 공표된 이상 언론사 등의 주장이나 다름 없는 것이고, 독자나 시청자 편에서는 보도내용에 대하여 고도의 신뢰를 가지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도 언론보도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피해자가 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가질 것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 정당한 이익을 갖는다 함은 피해자가 보도내용에 대응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실질적인 이익이나 필요가 있음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정당한 이익이 있기 위하여는 먼저 보도내용에 대하여 실제로 피해를 입었어야 하고,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언론보도를 청구할 이익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3) "청구된 언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가 아닐 것

(4)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아닐 것

(5) "위법한 내용"이 아닐 것

2. 추후보도청구권의 요건

방송보도 등에 의하여 범죄형의가 있다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방송국 등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정간법 제 20 조).

3. 정정보도청구권의 요건

정정보도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하는데 아래에서는 정정보도청구권의 일반적 민 요건에 대하여 본다.

(1) 보도내용이 진실이 아닐 것

원문보도의 내용이 진실이 아니어야 하므로 그 점에서 반론보도청구권의 요건과 다르다. 전체적으로 진실이 아니라면 정정보도청구가 허용 될 것이다.

보도내용이 진실인가의 여부는 기사본문의 내용뿐만 아니라 제목과 본문의 크기 및 배치, 본문의 길이 등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일반독자들이 보통의 주의와 관심을 가지고 통상 기사를 읽는 방법에 의하여 기사로부터 받을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입증책임은 언론보도청구권과 달리 피해자가 보도내용이 진실이 아니라는 입증을 하여야 한다.

(2) 방송국 등의 고의 과실이 있을 것

원문보도로 인하여 관련자가 피해를 입을 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한다. 위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해도 가능하다.

(3) 보도행위나 보도내용이 위법할 것

(4) 피해의 발생

4. 손해배상청구권의 요건

(1) 사실이거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할 것

언론피해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라 함은 "사람의 품성,德行,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을 말한다.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로 인한 명예훼손에 있어서는 그 의견 또는 논평 자체는 위법성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고, 그 의견 또는 논평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는가, 혹은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표현행위를 한 사람이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 하는 것이 위법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라면서 대법원은 의견 또는 논평으로 볼 수 있는 부분에서 그 전제로서 적시한 사실들이 그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 행위를 인정한 원심을 수긍하였다.

(2) 방송국 등에게 고의 과실이 있을 것

(3) 보도행위나 보도내용이 위법할 것

(4) 보도행위로 피해를 입었을 것

VI. 맺는 말

언론피해에 대한 구제제도에 관하여는 그 동안 많은 논문이 있어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언론피해의 구제제도 전반 및 그 구제제도에 관한 국내 판례를 정리한 자료가 없는 것 같았다. 졸필이나마 우리 나라의 언론창달에 도움이 되었으면 더 큰 영광이 없을 것이다.

- 서울대 법학과 졸

- 대전지법 공주지원장,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역임

- 현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